정관

2021. 3. 25.

신세계건설 주식회사

정 관

제1장 총 칙

제 1 조(상호) 본 회사는 신세계건설 주식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Shinsegae Engineering & Construction Inc. 라하며, 이하 본 회사라 한다.

제 2 조(목적)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1. 다음 각호의 설계, 시공 및 감리업
 - 1) 토목, 건축, 도로포장, 철강재설치, 전기냉난방 공사업
 - 2) 조경 공사업
 - 3) 전기 및 전기통신 공사업
 - 4) 소방설비 공사업
 - 5) 기계설비 공사업
 - 6) 특정 열 사용 공사업 및 가스시설 공사업
 - 7) 문화재 보수업 및 유지공사업
 - 8)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업
 - 9) 분뇨처리 시설등의 설계 및 시공업
 - 10) 수질,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방지시설업
 - 11) 산업, 환경설비 공사업
- 2. 플랜트 설계, 제작, 시공 및 감리업
- 3. 해외건설업 및 해외개발사업
- 4. 토목, 건축, 전기, 기계설비, 청소자재 제조 및 판매업
- 5. 부동산업(매매, 분양, 임대, 개발, 중개, 주택사업, 컨설팅, 토지구획정리사업, 택지개발사업등)
- 6. 안전관리 진단업 및 대행업
- 7. 시설물 유지관리업
- 8. 주차장 사업
- 9. 수출입업
- 10. 기술용역업(냉난방, 냉동기계, 건축기계설비, 건축전기설비, 덕트청소, 물탱크 청소, 실내환경측정)
- 11. 엔지니어링 활동업
- 12. 유통업 및 관련 부대사업
- 13. 종합레저, 체육시설업, 체육시설관리용역업 및 관련된 컨설팅, 관리용역업(골 프장 및 부대시설)

- 14. 묘목재배 및 조림사업
- 15. 회원권 분양 대행업(스포츠, 골프, 콘도등)
- 16. 교육 및 출판업
- 17. 에너지 절감사업 및 관련 컨설팅 사업
- 18. 빌딩 개보수 공사업(건축, 전기, 설비, 소방)
- 19. 민자사업(도로, 항만, 철도, 고속철도, 지하철, 경전철등)의 건설 및 운영업
- 20. 자동차 및 중기의 임대 및 정비업
- 21. 용역업(빌딩관리, 경비, 청소, 조경관리, 에너지 관리)및 공동주택 관리업
- 22. 여행알선업,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 시설업
- 23. 신·재생에너지 사업
- 24. 건설자재의 생산, 판매 및 임대업
- 25. 공중목욕탕, 수영장, 고급 사우나업
- 26. 스파 서비스업
- 27. 음식점업
- 28. 음,식료 제조 판매업
- 29. 위탁운영업
- 30. 종합 소매업
- 31. 스포츠 서비스업
- 32. 유원시설업
- 33. 주택임대관리업
- 34. 발전업
- 35. 주류 도소매업
- 36.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
- 37. 에너지진단 사업
- 38. 전 각호에 관련된 사업의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
- 제 3 조(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)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.
-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결의로 국내외에 지점, 출장소, 사무소 및 현지법 인을 둘 수 있다.
- 제 4 조(공고방법)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(http://www.shinsegae-enc.com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.

제 2 장 주 식

제 5 조(발행예정주식의 총수)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로 한다.

제 6 조(일주의 금액)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(주식의 종류)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.

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,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, 상환주식,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. 제7조의 2 내지 제7조의 5 에서 정한 1종 내지 4종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
제 7 조의 2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) ① 본 회사가 발행할 1 종 종류주식(이하 이조에서는 "종류주식"이라 함)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으로 한다.

- ②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%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.
-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종류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.
-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분에 우선하여 배당한다.
- 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
- ⑥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 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.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종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한다. [2021.3.25 수정]

제 7 조의 3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②) ① 본 회사가 발행할 2 종 종류주식은 무의 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(이하 이조에서는 "종류주식"이라 함)으로 한다.

-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, 누적성, 신주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 7 조의 2 제 2 항, 제 4 항, 제 5 항을 준용한다.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다.
-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.
 - 1.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. 다만, 이사회 결의로 전환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 - 2.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.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,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.
 - 3.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.
 - 4. 종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.
 - 가. 적대적 M&A 가 우려되는 경우
 - 나. 종류주식의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경우

제 7 조의 4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③) ① 본 회사가 발행할 3 종 종류주식은 무의결 권 배당우선 상환주식(이하 이조에서는 "종류주식"이라 함)으로 한다.

-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, 누적성, 신주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 7 조의 2 제 2 항, 제 4 항, 제 5 항을 준용한다.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다.
-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.
 - 1. 상환가액은 배당률,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 다만,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, 조정사유,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.
 - 2.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 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 다만,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.
 - 가.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
 - 나.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

- 3. 종류주식은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. 다만,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,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.
- 4.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 - 1. 상환가액: 제 3 항 제 1 호와 같음.
 - 2. 상환기간: 제 3 항 제 2 호와 같음. 다만 가목의 "상환기간"은 "상환청구기간" 으로 본다.
 - 3.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 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,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.
 - 4. 상환청구주주는 2 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(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)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 7 조의 5 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④) ① 본 회사가 발행할 4 종 종류주식은 회사의 선택 및 주주의 청구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전환주식(이하 이 조에서 "종류주식"이라 함)으로 하며,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. 종류주식은 이익으로 소각하거나,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되어있다.

-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, 누적성, 신주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 7 조의 2 제 2 항, 제 4 항, 제 5 항을 준용한다.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다.
- ③ 종류주식의 전환은 제7조의 3 제3항을 준용한다.
- ④ 종류주식의 상환은 제7조의 4 제3 내지 5항을 준용한다.

제 8 조(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본 회사는 주 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

제 9 조(신주의 인수)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-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
 - 가. 상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
 - 나. 일반종업원 및 임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
 - 다. 상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(DR)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- 라. 정관 제 9 조의 3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- 마. 상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- 바.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, 기타 제 3 자 등에게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- 사.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- ③ 제 2 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, 제 2 호, 제 2 호의 2,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.
- ④ 제 1 항 및 제 2 항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⑦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.
- ⑧ 회사는 제2항 마.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.
 - 1.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

- 2.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- 3.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- 4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
제 9 조의 2(동등배당)

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(전환된 경우를 포함)된 동종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. [21.3.25 수정]

제 9 조의 3(주식매수 선택권) ① 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범위 내에서 상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발행주식의 100 분의 3 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

-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, 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한다.
- 단,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한다.
 - 1. 최대주주(상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특수관계인(상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. 다만,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자를 포함한다)는 제외한다.
 - 2. 주요주주(상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.이하 같다) 및 그 특수관계인.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 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자를 포함한다)는 제외한 다.
 - 3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
-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.)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.

-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
 - 1.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
 - 나. 당해 주식의 권면액
 - 2.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
-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2 년 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.
-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. 이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
- ⑦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 [2021.3.25 삭제 및 수정]
 - 1.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
 - 2.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
 - 3.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
 - 4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 10 조(명의개서 대리인) ① 본 회사는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.

-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리사무등의 범위는 이사회의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.
-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부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,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
-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. [2021.3.25 수정]

제 11 조 삭제

제 12 조(기준일)

- ① 본 회사는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 날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
- ②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[2021.3.25 삭제 및 수정]

제3장 사채

제 13 조 (전환사채의 발행)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- 1.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
- 2.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, 기타 제3자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- ②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이천억원은 보통주식으로, 이천억원은 종류주식 중 이사회가 정하는 주식으로 하고,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. 다만, 위 기간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. [2021.3.25 수정]
- ⑥ 제 1 항 제 1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 9 조 제 8 항 제 1 호, 제 3 호, 제 4 호의 신주배정 방식을 준용한다.

제 14 조(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) ① 본 회사는 액면총액이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 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1.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

- 2.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등, 기타 제 3 자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-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이천억원은 보통주식으로, 이천억원은 종류주식 중 이사회가 정하는 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위 기간 내에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로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⑤ 제 1 항 제 1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 9 조 제 8 항 제 1 호, 제 3 호, 제 4 호의 신주배정 방식을 준용한다. [2021.3.25 삭제 및 수정] 제 14 조 2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제 10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

제 14 조 3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

제 4 장 주주총회

제 15 조(소집)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한다. ② 정기 주주총회는 제 12 조 1 항에 따라 정해진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 [2021.3.25 수정]

- ③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 한다.
- ④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29 조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.

제 16 조(소집통지 및 공고)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 시에서 발행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 지에 갈음할 수 있다. ③ 본 회사가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등 관계법규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 그러나 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,지점, 명의개서대행회사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.

제 17 조(소집지)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도 있다.

제 18조(의장) ① 주주총회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
② 대표이사가 유고시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. 다만,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 29 조제 3 항의 규정을 준 용한다.

제 19 조(의장의 질서유지권) 주주총회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사무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,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 20조(주주의 의결권) 주주의 의결권은 일주마다 1개로 한다.

제 21 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,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그러나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주주총회 개회전에 본 회사 소정양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주주는 그 내용이 명시된 일통의 위임장으로서 수개의 총회에 관한 포괄대리권을 줄 수 있다.

제 22 조(주주총회의 의결방법)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
제 23 조(의사록)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.

제 5 장 이사•이사회•감사위원회

제 24조(이사의 수)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.

제 25 조(이사의 선임)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한다.

-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- ③ 본 회사는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에서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382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.

제 26 조(이사의 임기)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되, 사외이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. 그러나,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

제 27 조(이사의 보선)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정관 및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② 사외이사가 사임·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24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 28 조(대표이사등의 선임) ① 본 회사 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
②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, 이사, 지배인 약간명씩을 선임할 수 있다.

제29조(이사의 직무)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인 이상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.

-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한다.
- ③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,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수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29 조의 2(이사의 보고의무)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30 조(삭제)

제 31 조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 요사항을 결의한다.

-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1주간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

제 32 조(이사회의 결의방법)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 397 조의 2(회사기회유용금지)및 제 398 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33 조(이사의 경업금지)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본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. 단 영업중임을 알고 이사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34 조(이사회의 의사록)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 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.

제 34 조의 2(위원회)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.

- 1. 감사위원회
- 2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- ②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 제 31 조, 제 32 조 및 제 3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 35 조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

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.

제 36 조(상담역 및 고문)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제 36 조의 2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정관 제 34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

-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제 542 조의 10 제 2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 [2021.3.25 수정]
-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 [2021.3.25 수정]
- ⑥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시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.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[2021.3.25 수정]
- 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
제 36 조의 3(감사위원회의 직무 등)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
-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이사(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에게 제출하여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제 2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
-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.
-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-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.
-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

제 36 조의 4(감사록)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6 장 계 산

제 37조(사업년도)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.

제 38 조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·비치 등)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 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,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 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대차대조표
- 2. 손익계산서
- 3.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
- ② 감사위원회는 제 1 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 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
- ③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점에 5 년간 보관한다.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- ④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⑤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.

제 38 조의 2(외부감사인의 선임) 본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,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39조(이익금의 처분) 본 회사는 매 사업년도 이익금(이월이익잉여금 포함)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
- 1. 이익준비금(상법상의 이익준비금)
- 2. 기타의 법정적립금
- 3. 주주배당금
- 4. 임의 적립금
- 5.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

제 40조(이익배당)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,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

- ② 제 1 항의 배당은 제 12 조 1 항에 의하여 정해진 날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 [2021.3.25 수정]
- ③ 주주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④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 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.

제 41 조(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)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
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.

부 칙

본 정관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- 1991. 8.11 제정
- 1995. 3.20 개정(제 2 조,제 5 조)
- 1996. 3.08 개정(10조2항신설,제16,19,22,24,30,31조 부칙)
- 1997. 5.21 개정(제 1 조 ~ 제 41 조)
- 1997. 6.02 개정(제 1 조, 제 2 조의 25)
- 1998. 8.01 개정(2 조 1 항의 2,5,6,7 호,2,11,14,15,20,21,22 항 신설 및 2 조 1 항의 1,3,8,9,10 호,3,4,5,10,13 항의 일부내용 추가, 2 조 19 항의 용어 정정,5 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,7 조 우선주식의 수,8 조 발행주식의 종류).
- 1999. 3. 26 개정(제 7 조의 2, 9 조, 12 조, 24 조, 25 조 변경 및 일부 추가)
- 2000. 3. 18 개정(제 5 조,제 7 조의 2,제 8 조,제 9 조,제 9 조의 3,제 29 조,제 31 조 제 32 조,제 34 조 변경 및 일부 추가)
- 2001. 3.17 개정(제 9 조,제 9 조의 3,제 13 조, 제 14 조. 제 16 조, 제 39 조, 제 39 조 조의 2, 제 40 조, 부칙 변경 및 일부 추가)
- 2002. 3.15 개정(제 38 조의 2 신설 및 제 9 조의 3,제 13 조, 제 14 조, 제 26 조, 부칙 변경 및 일부 추가)
- 2005. 3.15 개정(제 2 조 1 항 11 호 추가)
- 2009. 3.06 개정(제 9 조 2 항, 제 9 조의 3 1 항,2 항,4 항, 제 9 조의 4 1 항, 2 항, 제 16 조 3 항, 제 39 조의 2 1 항의 법령변경 및 제 16 조 2 항 소집공고방법 추가)
- 2011. 3.18 개정 (제 2 조 23 항 추가)

부 칙

이 정관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다만, 제 9 조,제 30 조,제 32 조,제 38 조,제 39 조의 2,제 40 조의 개정내용은 2012 년 4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.

2012. 03. 02 개정 (제 2 조,제 3 조,제 4 조,제 16 조,제 30 조,제 32 조,제 38 조, 제 39 조 의 2, 제 40 조 변경 및 일부 추가,삭제, 부칙 추가)

부 칙

본 정관은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2013. 03. 15 개정(제 9 조의 3, 제 26 조)

부 칙

이 정관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2014. 3. 14. 개정 (제 1 조, 제 5 조, 제 7 조, 제 7 조의 2, 제 9 조, 제 12 조, 제 13 조, 제 14 조 변경 및 일부 추가, 제 7 조의 3, 제 7 조의 4, 제 7 조의 5 신설, 제 9 조의 4 삭제).

부 칙

본 정관은 2015 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2015.03.13 개정(제 2 조, 제 4 조)

부 칙

① 본 정관은 2016년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2016. 03. 11. 개정(제 2 조, 제 24 조, 제 25 조, 제 26 조, 제 27 조, 제 29 조의 2, 제 30 조, 제 31 조, 제 34 조, 제 34 조의 2, 제 35 조, 제 36 조의 2 내지 4, 제 38 조, 제 38 조의 2)

② 본 정관개정 시행일 이전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선임 당시의 정관 및 해당 이사선임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기까지 그 자격을 보유한다.

부 칙

① 본 정관은 2017년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2017.03.10. 개정(제 2 조)

부 칙

본 정관은 2019 년 3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8 조, 제 10 조, 제 11 조, 제 14 조 3 개정내용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시행되는 19 년 9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.

2019. 03. 13. 개정(제 8 조, 제 10 조, 제 11 조, 제 14 조의 2, 제 14 조의 3, 제 15 조, 제 18 조, 제 36 조의 3, 제 38 조, 제 38 조의 2)

부 칙

- ① 본 정관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2020.03.24. 개정(제 2 조, 제 31 조, 제 34 조의 2)

<u>부 칙</u>

- ① 본 정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2021. 03. 25. 개정 (제 7 조의 2, 제 9 조의 2, 제 9 조의 3, 제 10 조, 제 12 조, 제 13 조, 제 14 조, 제 15 조, 제 36 조의 2, 제 40 조)